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5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송언석·구자근·이인선

박수영 · 김상훈 · 임이자

박성훈 • 박준태 • 고동진

유영하 · 이종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그 구성도 도·소매, 음식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이 중심이 되고 있음.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업무추진비로서"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합계액 중"으로, "기업업무추진비는"을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불산입 특례) ① 삭 제	불산입 특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6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u>기업업무추진비로서</u> 다음 각 호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같은 법
의 요건을 모두 갖춘 <u>기업업무</u>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
<u>추진비는</u> 내국인의 기업업무추	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
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의 합계액 중 기업업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추진비에 대해서는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	
도액의 <u>100분의 10</u> 에 상당하는	<u>100분의 20</u>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